한국의 남해 대륙붕은 중요한 해저영토이다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박 용 안

세계2차대전이 끝난 1945년 10월 미국정부 제33대 Harry S. Truman 대통령의 해양 국제법적 권원의 법적 대륙붕선언(Continental shelf proclamation)은 대륙붕 해저를 소유한 세계의 모든 연안국(coastal State)들이 대륙붕 소유의 경계범위와 대륙붕의 해저자원을 개발 이용하려는 국가적 욕망을 부추기는 국제적 추세를 가져왔다. 그래서 유엔해양법협약제1차(1958년)협약과 제2차(1960년)협약을 거쳐 제3차(1994년 11월 16일 발효)협약에서 구체적인 대륙붕의 확장 범위의 경계획정 법적권원과 방법(경계획정 문서 작성 지침서)이 확정되었다. 즉, 유엔 해양법 제76조에 근거하여 연안국의 대륙붕은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으로 우선적으로 350해리까지 확장될 수 있다.

제3차 유엔해양법을 비준한 연안당사국은 연안국의 확장된 대륙붕의 경계획정 문서를 유엔의 대륙붕한계위원회(CLCS/UN DOALOS)에 제출하여 심사받고 심사된 결과를 권고(recom-mendation)하면 경계를 확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5월 11일에 200해리 이원의 확장된 남해 대륙붕경계획정의 예비정보 문서를 유엔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더 넓은 대륙붕 해저영토를 소유하게 된 새로운 국제법적인 제3차 해양법적인 현실을 3면이 바다인 한반도의 국민의 몇 %의 다수 국민이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지정학적 필연적 위치에서 해양지향적인 국가정책을 슬기롭게 수립하고 잃어버린 1,000년의 바다를 되찾는 국가적 과제를 책임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현재의 한반도 해양의 대륙붕경계획정 문제가 얼마만큼 중요한 국면에 처해 있는지 인식하고 있는가 질문하면서 이 제언의 글을 쓰는 것이다.

어떤 경우든, 국가의 경계는 국가의 관할권이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 경계획정이어야 한다. 한번 국가의 경계가 잘못 되면, 즉, 정부 부처의 담당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100년 이후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만족할 수 있는 국가이익과 번영을 우선하고 국가의 모든 경계획정을 상대국과 훌륭히 싸워서 쟁취하는 경우가 아니면, 역사와 국민의 엄청난 저항과 질책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가의 최고 책임자는 관련 담당 고급공무원과 장관의 잘못된 판단의 업무 판단에 근거한 정책시행의 결과에 큰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웃 나라인 일본이나 중국 두 나라는 해양 경계획정의 중대한 국가 정책 과제를 다루는 담당 외교부와 해양관련 부처의 공무원을 최대로 우대하면서 특별한 해양경계문제 단위 별 해결 방안과 대처방안을 심사숙고 연구하게 하고 민간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연구하게 하는 매우 치밀함을 보이고 있고,

결점과 허점 없는 해결방안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① 북한과의 NLL 문제, ② 중국, 일본 양국과의 EEZ 경계획정문제 및 ③ 일본, 중국 양국과의 광대한 남해 해저 대륙붕경계획정 문제를 자손만대의 국가이익과 번영을 목표로 허점과 실수를 용납 못하는 단호한 각오와 자세로 해결하여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와 있는 것을 이명박 정부와 정치인들이 인식하여야 한다고 제언하는 바이다. 특히, 엄청난 석유와 자연가스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이른바 남해 대륙붕(동지나해 해저대륙붕)의 확장 소유를 주장하는 정식문서를 유엔에 제출하고 심사를 요청하는 한편, 상대국가와 상호 윈윈하는 지혜로운 외교협상을 훌륭하게 성취하여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의 국민과 후대의 자손들에게 크게 질책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정부는 2009년 5월 11일에 이미 P. I. 문서(예비문서)를 유엔에 제출하였다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정식문서 제출을 위한 국가정책 · 전략을 추구하여 남해 대륙붕의 확장경계의 정식문서가 CLCS에 제출되고 CLCS의 심사를 확실하게 받은 것은 올바른 일이다. 실제적인 정규문서를 심사문서로써 CLCS/UN에 제출하면서 당사국(일본, 중국)과 외교적 협상의 어려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국가 이익과 번영의 권리를 단숨에 포기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해양경계획정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여 외교적 측면, 국방적 측면, 해양자원 확보측면 및 해양공간 확보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국가 정책방향은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과제이다. 자손만대의 한반도 우리 민족이 해양, 특히 대륙붕으로부터 번영을 추구하고 성취하여야 하는 확장된 해저대륙붕의 확보를 정부가 소홀히 하면 그것은 먼 훗날 후손들로부터 크게 질책 받고 원망받는 정부로 전락되고 역사에 수치스럽게 기록될 것이다. 국가경계 해양획정과 영토 문제를 다루는 국가 공무원은 국가이익과 번영을 투철하게 주장하는 혼신의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대통령으로부터 외교통상부의 담당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남해 대륙붕 해저영토의 확장된 경계를 국제해양법적으로 당당하게 인정 받는 정식문서를 제출하고 CLCS/UN DOALOS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제언하는 바이다.

제3차 유엔해양법의 제6부 76조는 Truman대통령의 대륙붕선언에서 모호한 법적 대륙붕의 정의와 경계획정의 불확실성을 분명하게 하는 매우 과학적인 법적조항이라고 해석된다. 위에서 설명된 내용과 필자의 제언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76조의 대륙붕 정의와 법적 권원의 대륙붕경계획정에 관한 이해가 매우 필요하다.

제6부 76조 대륙붕의 정의

1. The continental shelf of a coastal State comprises the sea-bed and subsoil of the submarine areas that extend beyond its territorial sea throughout the natural prolongation of its land territory to the outer edge of the continental margin, or to a distance of 200 nautical miles from the baselines from which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is measured where the outer edge of the continental margin does not extend up to that distance.

(1) 연안국의 대륙붕은 영해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른 대륙주변부의 바깥 끝까지 또는 대륙주변부의 바깥 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와 하층토로 이루어진다.

2. The continental shelf of a coastal State shall not extend beyond the limits provided for in paragraphs 4 to 6.

(2) 연안국의 대륙붕은 제4항부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한계 밖으로 확장될 수 없다.

3. The continental margin comprises the submerged prolongation of the land mass of the coastal State, and consists of the sea-bed and subsoil of the shelf, the slope and the rise. It does not include the deep ocean floor with its ocean ridges or the subsoil thereof.

(3) 대륙주변부는 연안국 육지의 해저 연장으로서, 대륙붕-대륙사면-대륙대의 해저와 하층토로 이루어진다. 대륙주변부는 해저산맥과 심해저평원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4. (a)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coastal State shall establish the outer edge of the continental · margin wherever the margin extends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the baselines from which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is measured, by either:

(4) (a) 이 협약의 목적상 연안국은 대륙주변부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밖까지 확장되는 곳에서는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로 대륙주변부의 바깥 끝을 정한다.

(i) a line delinea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7 by reference to the outer most fixed points at each of which the thickness of sedimentary rocks is at least 1 per cent of the shortest distance from such point to the foot of the continental slope; or

(i) 퇴적암의 두께가 그 가장 바깥 고정점으로부터 대륙사면의 끝까지 연결한 가장 가까운 거리의 최소한 1퍼센트인 가장 바깥 고정점을 제7항에 따라 연결한 선

(ii) a line delinea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7 by reference to fixed points not more than 60 nautical miles from the foot of the continental slope.

(ii) 대륙사면의 끝으로부터 60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고정점을 제7항에 따라 연결한 선

(b) In the absence of evidence to the contrary, the foot of the continental slope shall be determined as the point of maximum change in the gradient at its base.

(b) 반대의 증거가 없는 경우, 대륙사면의 끝은 그 기저에서 경사도의 최대변경점으로 결정된다.

5. The fixed points comprising the line of the outer limits of the continental helf on the sea-bed, draw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4 (a) (i) arid (ii),either shall not exceed 350 nautical miles from the baselines from which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is measured or shall not exceed 100 nautical miles from the 2,500 metre isobath, which is a line connecting the depth of 2,500m metres.

(5) 제4항 (a)(i)과 (ii)의 규정에 따라 그은 해저에 있는 대륙붕의 바깥한계선을 이루고 고정점은 영해기선으로부터 350해리를 넘거나 2,500미터 수심을 연결하는 선인 2,500미터 등심선으로부터 100해리를 넘을 수 없다.

6.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5, on submarine ridges, the outer limit of the continental shelf shall not exceed 350 nautical miles from the baselines from which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is measured. This para-graph does not apply to submarine elevations that are natural components of the continental margin, such as its plateaux, rises, caps, banks and spurs.

(6)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저산맥에서는 대륙붕의 바깥한계는 영해기선으로부터 350해리를 넘을 수 없다. 이 항은 해저고원 · 용기 · 캡 · 뱅크 및 해저돌출부와 같은 대륙주변부의 자연적 구성요소인 해저고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7. The coastal State shall delineate the outer limits of its continental shelf, where that shelf extends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the baselines from which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is measured, by straight lines not exceeding 60M in length, connecting fixed points, defined by coordinates of latitude and longitude.

(7) 대륙붕이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밖으로 확장되는 경우, 연안국은 경도와 위도 좌표로

표시된 고정점을 연결하되 그 길이가 60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직선으로 대륙붕의 바깥한계를 그어야 한다.

8. Informat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the baselines from which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is measured shall be submitted by the coastal State to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set up under Annex ll on the basis of equitable geographical representation, The Commission shall make recommendations to coastal States on matter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outer limits of their continental shelf. The limits of the shelf established by a coastal State on the basis of these recommendations shall be final and binding.

(8) 연안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는 대륙붕의 한계에 관한 정보를 공평한 지리적 배분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2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대륙붕 한계위원회(CLCS, Commission on the Limit of the Continental Shelf)에 제출한다. 위원회는 대륙붕의 바깥한계 설정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안국에 권고를 행한다. 이러한 권고를 기초로 연안국이 확정한 대륙붕의 한계는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9. The coastal State shall depos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charts and relevant information, including geodetic data, permanently describing the outer limits of its continental shelf. The Secretary-General shall give due publicity thereto.

(9) 연안국은 측지자료를 비롯하여 항구적으로 사국 대륙붕의 바깥한계를 표시하는 태도와 관련정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를 적절히 공표한다.

10.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re without prejudice to the question of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tween States with opposite or adjacent coasts.

(10) 이 76조의 규정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웃한 연안국의 대륙붕경계 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